

의안번호	2202669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4.10.28.
추 계 번호	24D2620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중앙회등에 운영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280억 7,300만원(연평균 56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운영비	4,842	5,019	5,202	5,392	5,592	26,046	5,209
교육훈련비	326	325	325	325	325	1,627	325
포상금	80	80	80	80	80	400	80
합계	5,247	5,424	5,607	5,797	5,997	28,073	5,615
국비(50%)	2,624	2,712	2,804	2,899	2,999	14,037	2,807
지방비(50%)	2,624	2,712	2,804	2,899	2,999	14,037	2,8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경비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이하 “중앙회등”이라 함)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등이 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10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경비 등의 지원)	○	-
2	안 제10조(포상)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에서는 중앙회등에 대한 경비 지원과 모범운전자 포상금으로 구분하여 추계하되, 이 중 중앙회등에 대한 경비 지원은 ①운영비, ②교육·훈련비를 추계함
-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이하 “중앙회등”이라 함)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
-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원하고 있어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7조제1항 중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등은 현재 시·도 예산¹⁾에 편성·운영 중에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²⁾
 - 안 제7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등의 보험료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³⁾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1)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예산 기준 14억 8,220만원(교통안전용품 마스크 4억 960만원, 모범운전자 준추점퍼 4억 960만원, 교육간담회 개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부터 각 시·도에 예산을 이관함

2) 그 밖에 안 제6조제7항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 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18조(모범운전자의 혜택 및 관리)에 따르면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수반요인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 따른 중앙회등에 대한 운영비, 교육·훈련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203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모범운전자연합회 개요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연합회 1개, 전국 18개 지부, 257개 지회가 있으며, 2023년말 기준 23,276명으로 연평균 2.0%씩 감소하고 있음

[표 2] 모범운전자 현황

(단위: 명, %)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률
회원 수	25,218	25,570	25,864	25,570	23,276	-2.0

자료: 경찰청

3) 자원봉사활동지원 사업(1141-302)의 내역사업으로, 2016년 5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자원봉사 보험을 통합 하였고, 2017년 5월에 중앙부처 간 유사보험 계약에 대한 통합을 체결하여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을 운영 중임

나. 중앙회등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중앙회등의 운영비

□ 중앙회등 운영비는 사무보조원 1인의 인건비와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가
정하여 추계함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중앙본부 1개소, 18개 시·도지부⁴⁾, 257개 지회로 구
성됨
- (인건비) 행정문서의 처리, 회원의 회비 수납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사무보조원 1인을 두되, 중앙본부와 18개 시·도지부는 종일 근무를,
257개 지회는 반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인건비는 아래 표와 같음
 - 사무보조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월 206만원(2024년 기준)으로 가정하고, 동 보수
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최저임금상승률⁵⁾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
담요율(국민연금 등)⁶⁾을 적용함

[표 3] 중앙회등의 인건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본부/ 지부 (19개소)	월급여(A, 천원)	2,177	2,259	2,344	2,433	2,526
	인건비(백만원) (A×12개월×19개소)	496	515	535	555	576
	기관부담금(백만원)	56	59	62	64	67
지회 (257개소)	월급여(B, 천원)	1,089	1,130	1,172	1,216	1,263
	인건비(백만원) (B×12개월×257개소)	3,357	3,484	3,615	3,751	3,896
	기관부담금(백만원)	380	398	416	436	456
합 계(백만원)		4,290	4,456	4,628	4,806	4,9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관리비 및 공공요금) 월 관리비 10만원, 전기료, 유류비 등 공공요금 월 6
만원(2024년 기준) 등 16만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중앙본부 등
276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 제주임(모범운전자연합회 홈페이지)

5) 2025년 1.7%, 2026년 3.9%, 2027년 3.8%, 2028년 3.8%, 2029년 3.8%, 2030년 3.8%

6) 2026년 11.330%, 2027년 11.425%, 2028년 11.519%, 2029년 11.614%, 2030년 11.704%

[표 4] 중앙회등의 관리비 및 공공요금: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1개소당 연간 공공요금(A, 천원)	2,000	2,040	2,080	2,122	2,164
본부/지부/지회(B, 개)	276	276	276	276	276
계(A×B, 백만원)	552	563	574	586	5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중앙회등의 인건비와 관리비, 공공요금을 모두 합한 운영비 추가재정소요는 아래표와 같음

[표 5] 중앙회 등의 운영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운영비	4,842	5,019	5,202	5,392	5,5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중앙회등의 교육·훈련비

- 중앙회등의 교육·훈련비용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회원수는 2023년 23,276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감률 -2.0%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회원수를 추계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6] 모범운전자 회원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회원수	21,918	21,484	21,057	20,640	20,2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의용소방대 관련 2024년 시·도 예산 중 위탁교육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13억 5,200만원으로, 이를 전체 의용소방대 인원 94,71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4,274원이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0.)한 소비자물가상승률⁷⁾을 적용하여 모범운전자 교육훈련비용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7) 2025년 2.1%, 2026년 이후 2.0%임

[표 7] 모범운전자 교육·훈련비 추정: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회원수(A, 명)	21,918	21,484	21,057	20,640	20,230
교육·훈련비 단가(B, 원)	14,851	15,148	15,451	15,760	16,075
계(A×B, 백만원)	326	325	325	325	325

주: 소숫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포상금(안 제9조)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8,000만원(2023년 기준)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모범운전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함

[표 8] 모범운전자 포상금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포상금	80	80	80	80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중앙회등에 운영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280억 7,300만원(연평균 56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운영비	4,842	5,019	5,202	5,392	5,592	26,046	5,209
교육훈련비	326	325	325	325	325	1,627	325
포상금	80	80	80	80	80	400	80
합계	5,247	5,424	5,607	5,797	5,997	28,073	5,615
국비(50%)	2,624	2,712	2,804	2,899	2,999	14,037	2,807
지방비(50%)	2,624	2,712	2,804	2,899	2,999	14,037	2,8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은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으로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추계에서의 운영비는 중앙회·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추계한 결과로, 실제 사무보조원 배치여부등 및 공공요금 지원금액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추계에서의 교육·훈련비 및 포상비는 의용소방대원 위탁교육비 및 행정안전부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교육·훈련비용 단가 및 인원, 포상인원 및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